

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3. 14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2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2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3. 14(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(안전행정부 예규)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기준변경 및 심의위원이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 마련(안 제4조)

- 현행 금고지정 절차 중 “「은행법」에 의한 인가를 받은”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른”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(안 별표1, 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」(안전행정부 예규)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
- 안 제4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은 의사정족수 기준을 변경하고 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,
- 안 제5조(지정절차)는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각 조합¹⁾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근거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.
- 안 「별표1」, 「별표2」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」의 평가방법과 배점을 반영하는 사항과, 「별표1」 평가 세부항목 1-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중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한 항목인 대손충당금적립률(2)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제

1)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(지방재정법 제77조(금고의 설치))

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여, 시 금고의 지정 및 절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2014. 3. 7.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 수정된 바,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홍성욱 위원>

- 참여기관이 확대되는데 현재 배점기준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에 적합한지 의문임. 별도 항목이 필요하지는 않은지?
⇒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 입찰의 취지에 따라 시행
- ‘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’ 항목은 새마을금고 등에 적합한 항목인지 의문. 이런 실적이 없다면 점수를 못 받게 됨.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임?
⇒ 전국 공통적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반영, 질의하신 부분은 재량의 부분임.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.
- 예를 들어 평가항목중 주요 경영지표 등이 은행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지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이 은행과 경쟁가능한지 검토하여 불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?
⇒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기준을 하향하여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
-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의 경우는?
⇒ 라. 항목의 경우는 금고 취급경험에 관한 사항이라 기존 금고 기관이 유리할 듯 함.
-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도 배점이 2점인데 실제로 시에서 예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?

⇒ 자율항목이라 검토가 가능함

<류수용 위원>

- 현재 새마을금고는 염려와 같이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음. 그래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. 점수 차별화는 맞지 않다고 봄.
-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등도 잘 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권장해야 함.

<차준택 위원>

- 안건을 제출한 사이에 안행부 예규 개정되었는데 설명 바람?
⇒ 3월 7일에 안행부 예규가 새로 왔음.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새로운 안이 필요 할 듯함.
- 정부예규 바뀌면 새로 입법예고 하고, 4월 임시회 있는데 그때 다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?
⇒ 절차상 이번에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것임.
-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항목이 기준에 포함된 취지는?
⇒ 지원책의 일환으로 대출 권장, 시에서는 2차 보전까지 해주는 입장으로 자율항목에 포함.
- 소상공인도 포함 가능?
⇒ 포함 가능함.
- 시민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항목을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인색했던 것은 사실임. 소상공인도 넣어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임.

<홍성욱 위원>

-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은행이 대출을 통하여 지역

사회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볼 때, 관내 대출실적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 듯한 인상 받음. 관내 중소기업에 소상공인까지 포함된 대출실적을 반영한다면 어느 특정은행에 치중되지 않으면서 항목 설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듯 함?

⇒ 명문화 시켜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음.

<이용범 위원>

○ 서울은 금고지정 절차가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가 늦어진 이유는?

⇒ 조례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너무 일찍 선정하면 시 금고 탈락한 은행이 장기간 금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황 등 고려

○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현실적으로 점수 줄여도 되지 않나?

⇒ 자율항목이라 가능

○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역사회 기여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. 어느 특정은행은 특성상 실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임. 서울은 이 항목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?

⇒ 자율항목이라 제외는 가능

<이상철 위원>

○ 시금고 출연금에 있어서 신한은행 출연금이 640억?

⇒ 출연금 250억, 협력사업비 398억임.

○ 협력사업비는 어떤 것인가?

⇒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은행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며, 출연금은 시에서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.

○ 250억에서 남은 금액은?

⇒ 250억은 전액 들어와서 세입 조치함.

○ 398억은?

⇒ 아직, 최종 통보는 받지 못함. 매년 정산하고 있음.

○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를 구분하는가?

⇒ 이제는 전액 세입에 편성하도록 개정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이용범, 차준택, 류수용, 이강호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

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: “대안” 채택